

# 반론보도는 언론사의 의무, 의무 발생의 조건은 피해자의 청구

글 양재규 | 언론법 전문 변호사  
eselltree92@gmail.com



광고주가 직접 물어보고 법적 전문가의 고견을 들어보는 **Law119**

양재규 언론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광고, 홍보, 마케팅 등 기업 업무 전반에서 꼭 알고 있어야 할 법률 상식에 대해 알아보자.

견해나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사안을 다루고자 할 때, 일방이 아닌 양방 혹은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을 다 들어보아야 한다. 일방의 이야기만 들으면 치우치기 쉽다.

물론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다 들으려면 인내심도 필요하고 신중해야 한다.

이와 같은 상식에서 언론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오히려 사실 확인 내지 검증을 업으로 하는 언론이기에 그 책임은 결코 가벼울 수 없다.



**Q** 언론사에서 양 측의 입장을 다 취재했음에도 상대방 입장만 반영된 편파적인 기사를 내보냈다. 보도 이후, 매출이 하락하는 등 가시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은 언론사에 대해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 특히 매출 하락에 따른 피해배상도 가능할지 궁금하다.

**A** 질문이 내포하고 있는 쟁점은 하나가 아니다. 반론보도와 손해배상이라는 두 가지 쟁점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는 것이 간명할 수 있겠다. 먼저 반론보도부터 살펴본다. 간혹 반론권 내지 반론보도를 언론사가 베푸는 은혜 내지 재량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본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틀린 생각이다. 반론보도는 언론사의 법적 의무고 책임이다. 반론보도를 언론사 재량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언론이 가진 편집권을 절대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물론 편집권은 언론사 고유의 권한이며 충분히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언론사의 편집권, 나아가 보다 포괄적인 개념인 언론의 취재 및 편집의 자유 또한 정당한 목적을 위해 법률에 의거, 신중하게 제한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반론보도청구권이다. 언론중재법 제16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반론보도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 언론중재법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 등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 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언론중재법에 따르면, 반론보도는 보도 대상인 사건·사안의 당사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이 권리의 행사에 언론사의 고의나 과실이 필요치 않으며 심지어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도 상관없이 있다. 그러니까 반론보도청구권자의 주장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당사자의 주장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으니 반론보도를 안 해줘도 된다? 그렇지 않다. 그래도 반론보도는 허용되어야 한다. 반론보도는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기 때문이다. 물론, 반론권 보장을 빌미로 명백한 허위 주장을 요구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 그래서 언론사에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



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게끔 항변권을 보장하고 있다(언론중재법 제16조 제3항, 제15조 제4항 제2호).

반론보도가 법적 의무라면, 이 의무는 언제 발생하는 것일까. 대략 ㉠보도가 이루어진 시점 ㉡반론보도가 청구된 시점 ㉢반론보도청구가 인용된 시점 세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이 중에서 가장 타당한 것은 ㉡반론보도가 청구된 시점이다. 반론보도청구권의 근거 규정인 언론중재법 제16조 제1항을 단순화시켜 보면, '피해자는 반론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가 된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반론보도를 청구할 때 비로소 언론사의 보도의무는 발생한다. 규정은 근거일 뿐이며 언론사에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은 당사자의 청구행위다. 그러므로 가만히 있지 말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언론사에 반론보도를 요구하라. 요구해야 의무가 발생한다.

다음으로 손해배상 문제를 살펴본다. 질문의 핵심은 편파적 보도로 인한 매출 하락분에 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일 것이다. 언론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법한 보도일 것 ㉡손해가 발생했을 것 ㉢위법한 보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

일반적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승패가 그러하듯 언론소송에서의 손해배상청구 역시 ㉢위법한 보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에 승패가 좌우된다.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선후관계가 명확해야 하고, 편파적 보도 외에 다른 매출 하락 요인이 없어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객관적인 증거



로 보여줄 수만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도 충분히 고려해볼 만하다. 물론,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매출 하락분이 될 것이다.

끝으로 반론보도 관련 유용한 팁을 하나 제시한다면, 언론사에 반론보도를 청구하면서 반론보도를 이행하는 시점까지 언론사로 하여금 일정한 액수의 돈을 지급하라고 덧붙일 필요가 있다. 실무상 '이행강제금'이라고 부르는 금전인데, 언론사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신속한 반론보도를 이행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대개 이행강제금이 발생하는 시점을 법원 판결 선고 또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성립 시점으로 명시하는데 반드시 그럴 필요가 없다. 언론사에 반론보도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은 피해자로부터 청구를 받은 때이니 '본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보도 이행 시점까지 1일에 얼마의 돈을 지급하라'는 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



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교육본부장을 맡고 있는 양재규 변호사는 풍부한 이론과 경험을 바탕으로 언론보도, 인격권 분야에서 언론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 광고, 홍보, 마케팅 등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법적 문제에 대해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soziro01@kaa.or.kr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시는 질문 중 주제를 선정, [Law119]에서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